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63

발의연월일: 2021. 7. 1.

발 의 자:홍기원·천준호·진성준

박상혁 · 오영환 · 윤준병

박영순 · 정필모 · 임호선

윤건영 · 김윤덕 · 이용우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·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고자동차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60대 남성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에 속아 중고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,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 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,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 으로써,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 및 안 제69조의4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

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9조의4(자동차 인터넷 표시·광고의 모니터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,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·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

제79조제1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4호의2 중 "제57조의2를"을 "제57조의2제1항을"로 한다.

제80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4.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자

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6.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57조의2(폐차 수집・알선 등의	제57조의2(폐차 수집・알선 등의
금지) (생 략)	금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
	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
	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
	<u>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를</u>
	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69조의4(자동차 인터넷 표시ㆍ
	광고의 모니터링) ① 국토교통
	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
	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
	・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, 제
	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
	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
	<u>링 할 수 있다.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
	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
	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	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
	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.

-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 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·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

제7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12. (생 략)
- 13.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 업을 한 자
- 14. (생략)
- 14의2. <u>제57조의2를</u>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

	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
	<u>정한다.</u>
제	78조의2(벌칙)
	1.•2. (현행과 같음)
	3.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
	<u>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을</u>
	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
	 업을 한 자
제	79조(벌칙)
	1. ~ 12. (현행과 같음)
	<삭 제>
	14. (현행과 같음)
	14의2. <u>제57</u> 조의2제1항을

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

15. ~ 19. (생략)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의3. (생 략)

<신 설>

6. ~ 10. (생 략) 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15. ~ 19. (현행과 같음)
제80조(벌칙)
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
5의4.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
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
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
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
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
시・광고를 한 자
6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8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 1 / 전체과 가이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
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6 제60조이/제2하으 의바하여

	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
	치를 하지 아니한 자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